2026년2월24일에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법률상의 요건~ (간이판)

① 선량한 행실일 것

법을 준수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

②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술을 보유할 것

일상 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으며, 보유한 자산이나 기술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안정된 생활이 기대될 것.

③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벌금형이나 구금형 등을 받지 않은 것.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변경사항 **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 최장 재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것.**

주의:2027년 3월 31일까지 재류 기간 “3년”을 보유한 경우, “최장 재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7년 3월 31일 현재, 재류 기간 “3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재류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받는 경우, 그 재류 자격으로 최초 신청을 할 때에만 “최장 재류 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사항 **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이 법무성 명령으로 정한 상륙 허가 기준 등에 부합할 것.**

마 공중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① 및 ② 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보완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또는 제3국 정주 난민인 경우에는, ② 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

각 요건의 상세 내용 및 유의사항, “원칙 10년 재류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resources/nyukan_nyukan50.html